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99

발의연월일: 2020. 8. 5.

발 의 자:이달곤·강대식·윤한홍

하영제 · 윤두현 · 서일준

최형두・강기윤・홍준표

김태호 · 김예지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등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장기화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일괄하여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어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함(안 제7조).
- 나.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2030 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함(안 제13조).
- 다.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2030년 12 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 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등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 일까지 증여세를 면제함(안 제71조).
- 마.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2조).
-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 여세·상속세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7 조의2).
- 사. 농어민 관련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등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 아.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적용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 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및 어민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 치세 등의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5조·1

06조 및 106조의2).

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25).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0년 1 2월 31일(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1일"을 "31일(마목의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1일"을 "31일(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1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2021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를 "제4호의 2"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1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 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 감면) ① -----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0년 12월 31일(제1호가목부터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목까지의 경우에는 2030년 1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2월 31일)-----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 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 율을 적용한다.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 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 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과세) ①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취득한 주식 또는출자지분가.~마.(생략)
- 4. ~ 6. (생략)
- ②·③ (생 략)
-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 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 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 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

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 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 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 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 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31일(제1항제3호마목의 경
우에는 2030년 12월 31일)
<u> </u>
5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2030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 략)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 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 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 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2000-1
<u>2030년</u>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 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 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 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 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

 ②·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 · ·
20

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 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 략)

② ~ ⑧ (생 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지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 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u> 30년</u>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u>2030년</u>

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 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 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 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지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 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u>2030년</u>

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 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 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 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 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 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1. ~ 3.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u>2030년</u>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 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1년</u> 1월 1일부터 <u>2021년</u>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 2. <u>2022년</u>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 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 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 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
1. 20	031년		2031년-
2. <u>2</u>	<u>032년</u>		
제89조	의3(조합	나등예탁	금에 대한
저육	과세 등) (1)	
16	1 11 0	<i>)</i>	
			2030년
<u>2031</u>	<u>년</u>		- <u>2031년</u>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한다)중에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② <u>2032년</u>
세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u>2030</u>
<u>년</u>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 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 2. (생략)

② ~ ⑧ (생 략)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경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_
	_
	_
	-
	-
	-
	-
	-
	_
	-
1.•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조]
	7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조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조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조	-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조	7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조	- -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조	7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조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조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조 용) ①	

- 1. ~ 6. (생략)
- ② (생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 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 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 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 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 1. ~ 12.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0년 12월

1. ~ b. (연앵과 숱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저	등)
①	
<u>제4호</u>	의2
<u>적용하며, 제1호</u> 등	<u> </u>
0년 12월 31일까지 공급	<u>한 것</u>
에만 적용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②	
<u>2030</u>	<u>년</u>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 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 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 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 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1. ~ 20.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 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 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1. ~ 2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u>2</u>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 1. 2. (생략)
- ② ~ ② (생 략)
-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 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 저 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 례) ① ~ ⑥ (생 략)
 - 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u>20</u> <u>20년</u>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 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 2030년</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② (현행과 같음)
세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
세의 면제) ①
· 2030년
<u>= 000 C</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
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2030년</u>
(8)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0	<u>2030</u>
<u>년</u>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	<u>년</u>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で 年)	1. ~ 3. (언앵과 살音)